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174호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 중소기업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9일 **중 소 기 업 청 장**

Ⅰ. 공통사항

1. 지원개요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며,

○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 연구기관의 우수인력과 장비 활용을 통해 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을 지칭

〈201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개요〉

(단위 : 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지원규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지원	지원규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2,697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717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600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150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380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180		
•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327	•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200
• 창업보육 기술개발	100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00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26
• 중소기업 R&D기획지원	30		
소 계(8개 세부사업)	4,184	소 계(4개 세부사업)	1,423

* 2010 중소기업청 예산편성안 기준('09.12월, 국회 심의중)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0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 종	업종분류	코드번호(세세분류)	업 종
숙박 및 음식점업	55112 55113 55119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오락업 및 문화업	91121 91223 91291 91249	골프장운영업 노래연습장운영업 무도장운영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55909 56111 56112 56113 56114 56120 56119 56131 56192 56193 56194 56132 56199 56211 56212 56219 56191 56220	그외 기타 숙박업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외 기타 음식점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제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공공,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	96111 96112 96113 96119 96121 96122 96129 96912 96913 96921 96922 96991 96992 96993 96999	이용업 두발미용업 피부미용업 기타미용업 욕탕업 마사지업 기타미용관련서비스업 가정용세탁업 세탁물공급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예식장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개인간병인 및 유사서비스업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68111 68112 68119 68121 68122 68129 68221	주거용건물임대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기타부동산임대업 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 기타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대학 · 연구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가능
* 대 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 ·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또는 http://sanhak.smba.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 등에 공고

5. 출연금 지원기준 등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 현금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6.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2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 일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경우 기술료 면제(세부 사업별 공고 참조)

7.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부도, 휴 · 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등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8. 기타 공지사항

○ 1개 중소기업당 12개 세부 사업별로 1개씩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 유사 사업계획은 1개의 사업에만 신청가능

○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2개 과제 이상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 불가(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은 제외)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산학연협력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R&D기획지원'을 제외) 중에서 '자유응모형 과제(舊 실용/일반과제)'를 주관기관으로 4회 이상 수행하였고, 재차 '자유응모형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 불가(접수 마감일 기준)

○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중소기업 R&D기획지원'을 제외한 11개 세부사업) 중에서 1개 중소기업당 2개 과제까지만 지원대상으로 선정

※ 1개 중소기업당 2개 과제 선정이 확정된 이후 다른 세부 사업에 선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제가 있는 경우, 평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선정된 과제중 1개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 사업 진행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업,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0년도 관련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담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Ⅱ.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부가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 **지원규모 : 2,697억원**(신규 1,774억원, 계속 923억원)

■ **지원내용**

① 글로벌 투자과제(250억원) : 수입대체 및 수출유망 품목 250개

② 미래 선도과제(874억원) : 중소기업형 녹색성장 유망기술* 등
* 4대 유망분야 : ①녹색성장, ②신성장동력, ③신제조기반, ④고부가 틈새분야

③ 창업 · 실용과제(650억원) : 창업기업, 소기업의 자유응모 기술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글로벌 투자과제	최대 3년, 10억원	65%이내	투자연계(단계협약)
미래 선도과제	최대 2년, 5억원	70%이내	지정공모
창업 · 실용과제	최대 1년, 2.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글로벌 투자과제	1월	2월	3월	4~10월
미래 선도과제	2월	3월	4~5월	6월
창업 · 실용과제	3월	4~5월	5~6월	6~7월

2.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사업개요**

○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신기술 및 국산화 제품개발을 지원
* 수요처 : 정부,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 해외바이어 등

■ **지원규모 : 600억원**(신규 410억원, 계속 190억원)

■ **지원내용**

① 수요조사과제 : 대기업 · 공공기관 등 국내 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과제

② 협력 · 펀드과제 : 공동지원자금 및 펀드 조성에 참여한 수요처에서 개발을 제안하여 채택된 과제
* 해당 수요처로부터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에 한해 신청 가능(추천서 제출)

③ 실용(해외수요)과제 : 신용등급이 양호한 해외수요처(바이어)로부터주문을 받은 신제품 개발 과제
* 해외수요처(바이어) 신용등급은 한국수출보험공사 해외수입자 신용등급조사 결과 D등급(Average) 이상이어야 하며, 수출인큐베이터 추천기업 우대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선도과제	수요조사과제	최대 2년, 5억원	50~75% 이내	지정공모
	협력 · 펀드과제	최대 3년, 10억원	37~50% 이내	지정공모
실용(해외수요)과제		최대 1년, 1.5억원	50% 이내	자유응모

■ **추진일정**

구 분		사업공고	과제공고	신청 · 접수	비 고
선도과제	수요조사과제	1월	매월 초	매월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 *수시 평가후 지원
	협력 · 펀드과제	〃	〃	〃	
실용(해외수요)과제		〃	–	〃	

3.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 · 상용화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 지원

○ 우수기술 사장화 방지 및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개발 위험요소 최소화와 기간 단축, 개발비 절감 등을 도모
* 공공연구기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국 · 공립 연구기관 등

■ **지원규모 : 150억원**(신규 98억원, 계속 52억원)

■ **지원내용**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상용화 되지 않은 기술(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중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 · 공고된 기술로써,

○ 중소기업이 이전받아 추가 개발을 통해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 특허출원중인 기술은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시 우대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수요조사과제	최대 2년, 5억원	75%이내	지정공모

■ **추진일정**

구 분	수요조사	사업공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수요조사과제	1월	2월	3월	4월~5월	6월

4.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 **사업개요**

○ 2개 이상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융복합기술의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 **지원규모 : 180억원**(신규 120억원, 계속 60억원)

■ **지원내용**

① 선도과제(60억원) : 중소기업형 미래유망 융합기술 30개 내외

② 실용과제(60억원) : 산업(기술)간 일반융합기술 30개 내외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선도과제	최대 2년, 5억원	75%이내	지정공모
실용과제	최대 1년, 2.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선도과제	2월	3월	4월~5월	6월
실용과제	〃	〃	〃	〃

5.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상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공정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국제 녹색규제 경쟁력을 제고

■ **지원규모 : 327억원**(신규 297억원, 계속 30억원)

■ **지원내용**

① 선도과제(150억원) : 연구기관 중심의 연-산협력 기술개발과제

② 실용과제(147억원) : 제조 중소기업의 녹색관련 자유응모 기술

■ **지원조건**

구 분	지 원 한 도	유 형	비 고
선도과제	○ 과제당 최대2년 5~6억원 한도 – 주관기관 : 과제당 **2년 이내 4억원한도** 지원 – 참여기업 : 기업당 **설비비용 1억원이내** 추가	연-산 협력 (과제당 참여 기업2개 이내)	지정공모
실용과제	○ 과제당 **1년이내 2.5억원 한도** 지원	기업 단독	자유응모

■ **참여자격**

○ 선도과제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공공연구기관
– 참여기업 : 제조공정을 갖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실용과제 : 벤처, 이노비즈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으로 제조공정을 갖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선도과제	2월	3월	4월~5월	6월
실용과제	〃	〃	〃	〃

6. 창업보육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창업보육시설 입주기업 또는 입주예정인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기술창업자의 기술개발 투자와 사업화를 촉진

■ **지원규모 : 100억원**(신규 50억원, 계속 50억원)

■ **지원내용**

① 선도과제 :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창업보육기업 유망기술

② 실용과제 : 창업보육시설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업력 5년 이내의 기업이 자유 응모하는 과제
* 창업보육시설 : 창업보육센터, 장애인기업 및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선도과제	최대 2년, 3억원	75%이내	지정공모
실용과제	최대 1년, 1.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획컨설팅
선도과제	1월	2월	3~4월	5월	6~8월
실용과제	〃	〃	〃	〃	〃

7.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 **사업개요**

○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신상품 · 신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 및 중소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촉진

■ **지원규모 : 100억원(신규)**

■ **지원내용**

① 서비스유망과제(75억원) : 산업기술분류 '지식서비스'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형 서비스 유망품목(제품) 약 50개 내외를 지원
* ('10.2) 중소기업 서비스유망품목 발굴 → ('10.3) 세부사업 공고

② 산업보안과제(25억원) : 중소기업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S/W개발 등 산업보안 기술경쟁력 제고 과제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서비스유망과제	최대 1년, 1.5억원	75%이내	품목별 공모
산업보안과제	최대 1년, 1억원	75%이내	〃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서비스유망과제	3월	4월	4~5월	6월
산업보안과제	3월	4월	4~5월	6월

8. 중소기업 R&D기획지원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려는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사전검증하고, 시장동향 및 개발전략 등을 제공하여 R&D효율성 제고
* 검증 결과가 우수한 기술과제는 차년도 R&D사업에 연계 지원

■ **지원규모 : 30억원(신규)**

■ **지원내용**

① 선도과제(15억원) : 녹색성장, 신성장동력 등 정책적 관심분야 과제

② 실용과제(15억원) : 창업초기기업의 자유 응모 기술과제

■ **지원조건**

○ 총 평가비용의 75% 이내에서, 최대 24백만원까지 지원
* 선도과제 · 실용과제는 우수과제의 R&D연계 시, 연계 대상사업에서 차이가 있으며, 동 사업을 통한 평가비용 지원금액은 동일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타당성 분석	연계지원 평가
중소기업 R&D기획 지원	2월	3월	3~4월	5월	6~9월	10월

Ⅲ.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 **사업개요**

○ 자체 R&D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과 대학 · 연구기관과의 협력 촉진 및 공동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17억원**(신규 597억원, 계속 120억원)

■ **지원조건**

○ 「정부-지자체-중소기업」이 Matching Fund로 소요비용 분담
– 전국사업 및 국제사업 : 정부(75%) + 기업(25%)
– 지역사업 : 정부(40%) + 지자체(35%) + 기업(25%)

■ **지원내용**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전국사업 및 국제사업	최대 2년, 4억원	75%이내	지정공모 및 자유응모
지역사업	최대 1년, 1억원	75%이내	자유응모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전국사업 및 국제사업	1월	2월	3~4월	5월
지역사업	〃	〃	〃	〃

2.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R&D 활동의 원천인 부설연구소를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 및 연구개발 전담직원의 R&D 역량을 제고

■ **지원규모 : 380억원**(신규 110억원, 계속 270억원)

■ **지원조건**

○ 「정부-지자체-중소기업」이 Matching Fund로 소요비용 분담
– 신규설치과제 : 정부(40%) + 지자체(35%) + 기업(25%)
– 업그레이드과제 : 정부(75%) + 기업(25%)

■ **지원내용**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신규설치과제	최대 2년, 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업그레이드과제	최대 2년, 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신규설치과제	1월	2월	3~4월	5월
업그레이드과제	〃	〃	〃	〃

3.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 **사업개요**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자원(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블루오션형 高부가가치 신기술 · 신제품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과제 지원

■ **지원규모 : 200억원**(신규 91억원, 계속 109억원)

■ **지원조건**

○ 「정부-지자체-중소기업」이 Matching Fund로 소요비용 분담
– 신규설치과제 : 정부(40%) + 지자체(35%) + 기업(25%)
– 업그레이드과제 : 정부(75%) + 기업(25%)

■ **지원내용**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신규설치과제	최대 2년, 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업그레이드과제	최대 2년, 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신규설치과제	1월	2월	3~4월	5월
업그레이드과제	〃	〃	〃	〃

■ **지원조건**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비영리 법인 연구기관

○ 참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구 분	개발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비 고
첨단장비활용과제	최대 2년, 5억원	75%이내	자유응모
슈퍼컴퓨터활용과제	최대 1년, 2억원	75%이내	자유응모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첨단장비활용과제	1월	2월	3~4월	5월
슈퍼컴퓨터활용과제	〃	〃	〃	〃

4.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 **사업개요**

○ 대학 · 연구기관이 보유한 첨단 연구장비의 중소기업 공동활용을 지원하여 국가장비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 기반마련

■ **지원규모 : 126억원(신규)**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R&D장비 이용료에 대해 5천만원 한도내에서 60%까지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지원조건**

○ 주관기관 : 중소기업과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장비(1천만원 이상)20대 이상을 보유한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참여기업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추진일정**

구 분	공 고	신청 ·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주관기관	1월	2월	2월	3월

※ 중소기업은 3월부터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 · 접수가 가능

Ⅳ. 추진일정 및 문의처

■ **사업별 추진일정**

구 분		2010년 예산(안)	사업 공고	신청 접수	선정 평가	협약 체결
총 계		5,607				
기술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2,697 (신규 1,774)				
	– 글로벌 투자과제	250	1월	2월	3월	4~10월
	– 미래 선도과제	874	2월	3월	4~5월	6월
	– 창업 · 실용과제	650	3월	4~5월	5~6월	6~7월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600	1월	매월	매월	매월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150	2월	3월	4~5월	6월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180	2월	3월	4~5월	6월
	•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 하반기는 실용과제만 시행	327	2월 (7월)	3월 (8월)	4~5월 (9~10월)	6월 (11월)
	• 창업보육 기술개발	100	1월	2월	3~4월	5월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00	3월	4월	4~5월	6월
	• 중소기업 R&D기획지원	30	2월	3월	3~4월	5월
	소 계	4,184				
산학연협력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717	1월	2월	3~4월	5월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380	1월	2월	3~4월	5월
	•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200	1월	2월	3~4월	5월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26				
	– 주관기관 선정		1월	2월	2월	3월
	– 중소기업 참여		'10년 3월부터 상시 온라인 신청접수			
	소 계	1,423				

■ **문의처**

구 분		중소기업청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기술개발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042-715-2353/5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기술개발과	042-715-2356/57	
	•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기술개발과	02-3787-0521/29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02-3787-0520/28	
	•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02-3787-0507/32	
	• 창업보육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02-3787-0506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기술개발과	02-3787-0450	
	• 중소기업 R&D기획지원	기술개발과	02-3787-0526	
산학연협력	• 첨단장비활용 기술개발	산학협력과	02-3787-0525/10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산학협력과	042-720-3309/18	(사)한국산학연협회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산학협력과	042-720-3311/16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산학협력과	042-720-3313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509-6771,2,4,5,7,8,9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부산 ·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49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대구 · 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 · 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1~8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대전 · 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1/35,36/56,57	대전시 유성구 신성로 70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2/34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2~33/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41-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3~55/58	경남 창원시 중앙로 134
제주특별자치도(기업사랑과)	064-710-2638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2
대 · 중소기업협력재단	02-368-8721,22/34,37/44,45,4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sanhak.smba.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 Kei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TIPA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KAIARI (사)한국산학연협회 대·중소기업협력재단